



【검토보고서】

2018.11.15(목)
제299회 임시회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의회
Yangju City Council

【전문위원 김유연】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과

가. 제안자 : 양주시장(사회복지과장)

나. 제출일 : 2018년 10월 31일

2. 제안이유

국가보훈대상자의 점진적인 수당 인상을 통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에 대한 보상적 급여라는 특수성을 고려, 거주기간 제한 문구를 삭제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 양양 및 자긍심 고취

3. 주요내용

가. 보훈명예수당 인상, 수당 지급 대상자 거주기간 제한 문구 삭제(안 제8조)

- 보훈명예수당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

-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변경

나. 국가보훈대상자 추가 및 근거법령 명시 (안 제8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다. 읍·면·동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명부 제출 및 지급대상자 결정시기(매분기)를 수당 지급시기인 매월로 동일하게 맞춤

(안 제9조, 제10조)

라. 전입시 타시군 수당과 중복 지급 방지 단서조항 추가 (안 제10조)

마. 제9조(수당등의 신청)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용어 명확화 등 정비

- 수당 지급신청서상 신청인 제출서류에 “국가유공자 확인서류”를

“국가유공자등 확인서류”로 수정

- 사망위로금 신청시 사망 신고하였을 경우 신청인의 제출서류 중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제출 생략토록 문구 추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입법예고 : 2018. 8. 14. ~ 9. 3. (20일간)

다. 부서협의

1) 협의기간 : 2018. 8. 7. ~ 8. 9. (3일간)

2) 협의결과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개요

- 본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이며
- 개정안에서는 보훈명예수당 인상, 수당 지급 대상자 거주기간 제한 문구 삭제 등 원활한 보훈사업 추진을 위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관계법령]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 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 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개정내용

1)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안 제8조)

-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관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서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변경함

○ 보훈명예수당을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

※ 국가보훈대상자 현황

(2018. 9월 기준, 단위: 명)

합계	독립 유공자	전몰 군경유족	무공·보국 수훈자	고엽제 전우회	6.25참전 유공자	월남전 참전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2,673	18	98	477	1	445	987	12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5.18민주 유공자	6.18자유 상이자	전·공상 공무원·군경	순직 공무원·군경	보훈보상 대상자
	2	2	6	2	522	78	23

※ 보훈명예수당 지급 현황

(2018. 9월 기준, 단위: 명)

구 분	국가보훈대상 등록자	지 급 대 상 (만 65세 이상)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원수	2,673	1,719	2,130	2,178	2,216	2,261	2,301

※ 연령별 수급대상자 수

(2018. 9월 기준, 단위: 명)

연령대	총계	65세~74세	75세~84세	85세~	비고
지급대상자수	1,719	969	367	383	

○ 개정안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금액을 월 3만원 인상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5년간 5,743,200천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비용추계

- 수당지급액 :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 지급조건 : 신청일 현재 양주시 거주,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 대상자 및 유족
- 대상인원

구 분	국가보훈대상 등록자	지급대상 (만 65세 이상)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유공자 수	2,673	2,130	2,178	2,216	2,261	2,301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비고	
세출	2,556,000	2,613,600	2,659,200	2,713,200	2,761,200	13,303,200		
보훈명예수당	2,556,000	2,613,600	2,659,200	2,713,200	2,761,200	13,303,200		
2018년 예산 대비 증가분	1,044,000	1,101,600	1,147,200	1,201,200	1,249,200	5,743,200	증가분	
재원조달	2,556,000	2,613,600	2,659,200	2,713,200	2,761,200	13,303,200		
자체 수입	소계	2,556,000	2,613,600	2,659,200	2,713,200	2,761,200	13,303,200	
	지방세수입	2,556,000	2,613,600	2,659,200	2,713,200	2,761,200	13,303,200	

- 2019년 추계시 1년 소요예산 : 2,556,000천원
⇒ 2018년 본예산 1,512,000천원 대비 1,044,000천원 증가
- 2019년 시행 이후 5년간 소요예산 추계 : 13,303,200천원
⇒ 2018년 본예산 1,512,000천원 대비 5,743,200천원 증가

○ 보훈명예수당의 수급권자 추가로 명시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현행규정	개정안
<p>제8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① (생략)</p> <p>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제2항에 해당 하는 사람 중 만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보훈명예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8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p> <p>① ----- ----- <u>신청일 현재(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u> ----- -.</p>
<p>1. 보훈명예수당: <u>월7만원</u></p> <p>2. (생략)</p> <p>② 수당의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5. (생략)</p> <p>③ (생략)</p>	<p>1. ----- <u>월 10만원</u></p> <p>2.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u>」의 적용을 받는 사람</p> <p>6. 「<u>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u>」의 적용을 받는 사람</p> <p>7.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2) 수당 등의 신청 (안 제9조)

○ 읍면동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명부 제출시기를 매분기말에서 매월로 변경함

현행규정	개정안
<p>제9조(수당 등의 신청) ① (생략)</p> <p>② 수당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u>매분기말</u> 10일까지 시장에게 지급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9조(수당 등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매월</u> ----- ----- ----- -----.</p> <p>③ (현행과 같음)</p>

3) 수당의 지급결정 및 지급 (안 제9조)

- 수당의 지급시기를 매분기말에서 매월로 변경함
- 제2항에 단서 신설

현행규정	개정안
<p>제10조(수당의 지급결정 및 지급) ① (생략)</p> <p>① 시장은 <u>분기별로</u> 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며,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단서 신설></p> <p>③ (생략)</p>	<p>제10조(수당의 지급결정 및 지급) ① (현행과 같음)</p> <p>① ---- <u>매월</u> ----- -----.</p> <p>② ----- ----- ----- -----.</p> <p>다만, 신청일이 속한 달에 전거주지에서 수당 등을 지급받은 국가보훈대상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은 제외하고, 수당 등을 지급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다. 종합검토 의견

-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을 인상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에 대한 보상적 급여라는 특수성을 고려, 거주기간 제한 문구를 삭제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 양양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보훈명예수당의 인상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인식과 애국심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보훈명예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현재 양주시의 수당 7만원은 경기도 시군 중에서는 중상위 수준이나 향후 2019년부터 월 1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도내에서는 가장 높은 지자체 중 하나가 됨
- 따라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에 대한 보상적 급여는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기 시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시의 재정여건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경기도 31개 시군 보훈명예수당 지급현황

- 10만원 : 2개 지자체
- 8만원 : 1개 지자체
- 7만원 : 10개 지자체
- 5만원 : 17개 지자체
- 3만원 : 1개 지자체

[참고자료]

참고자료 1

경기도 지자체 보훈명예수당 지급현황

□ 9개 시·군 : 나이제한 없음 , 26개 시·군 : 거주기간제한 없음

(2018.9월 기준)

시군명	보훈수당	참전수당	대상자 (명)	비 고
31개 시·군			107,679	
양주시	7만원(65세이상)	-	1,725	-3개월이상 거주
수원시	5만원(65세이상)	7만원	8,100	-거주기간제한 없음 -보훈수당과 참전수당 중복지원 불가
성남시	7만원 (65세이상)	-	8,000	-거주기간제한 없음
부천시	5만원 (65세이상)	-	6,100	-거주기간제한 없음 -상이등급1급 이상 나이제한 없음
용인시	7만원(65세이상)	3만원(80세이상)	8,850	-거주기간제한 없음 -보훈수당과 참전수당 중복 지원
안산시	5만원 (65세이상)	7만원 (65세이상)	3,520	-1개월이상 거주기간 제한 -보훈수당과 참전수당 중복지원 불가
안양시	7만원	7만원 (참전미망인포함)	5,600	-나이 및 거주기간제한 없음 -보훈수당과 참전수당 중복지원 불가
평택시	5만원 (65세 이상) 3만원 (65세 이하)	참전수당(70세이상) 4만원 참전미망인수당 3만원	4,080	-거주기간제한 없음 -보훈수당과 참전수당 중복 지원
시흥시	5만원	5만원	1,755	-나이 및 거주기간제한 없음 -보훈수당과 참전수당 중복지원 불가
화성시	10만원 (80세 이상) 8만원 (80세 미만)	-	5,355	-거주기간제한 없음
광명시	5만원 (65세이상)	7만원 (6.25참전자만)	2,300	-거주기간제한 없음 -보훈수당과 참전수당 중복지원 불가
군포시	5만원	-	3,108	-나이 및 거주기간제한 없음 -참전미망인 포함 지급
광주시	7만원	7만원	2,800	-나이 및 거주기간제한 없음 -보훈수당과 참전수당 중복지원 불가
김포시	5만원	5만원(80세 이상)	3,840	-거주기간제한 없음 -보훈수당과 참전수당 중복지원
이천시	5만원	참전수당10만원 (80세 이상) 참전미망인수당 5만원	1,683	-거주기간제한 없음 -보훈수당과 참전수당 중복지원 불가
안성시	5만원 (80세이상) 3만원 (80세이하)	참전수당 7만원 (80세 이상) 5만원 (80세 이하) 참전미망인수당 3만원	1,600	-거주기간제한 없음 -보훈수당과 참전수당 중복지원 불가

시군명	보훈수당	참전수당	대상자 (명)	비 고
오산시	8만원 (80세 이상) 5만원 (65세 이상) 2만원 (65세 이하)	-	1,445	-거주기간제한 없음
하남시	7만원	-	2,995	-나이 및 거주기간제한 없음
의왕시	5만원	2만원	910	-나이 및 거주기간제한 없음 -보훈수당과 참전수당 중복지원
여주시	7만원	참전수당(80세이상) 5만원 참전미망인수당 5만원	1,991	-거주기간제한 없음 -보훈수당과 참전수당 중복지원
양평군	5만원	참전수당 10만원 (80세 이상) 참전미망인수당 10만원 (80세 이상) 5만원 (80세미만)	1,790	-거주기간제한 없음 -보훈수당과 참전수당 중복지원 불가
과천시	5만원	30만원(80세이상) 년 1회 지급	700	-6개월이상 거주 -보훈수당과 참전수당 중복지원
고양시	3만원 (65세 이상)	5만원 (80세 이상) 3만원 (80세 이하)	8,730	-거주기간제한 없음 -보훈수당과 참전수당 중복지원 불가
남양주시	5만원	3만원(80세 이상) 참전미망인 포함	7,070	-거주기간제한 없음
의정부시	5만원 (65세 이상)	-	4,000	-3개월 이상 거주
파주시	5만원(65세이상)	-	3,716	-거주기간제한 없음
구리시	10만원	참전미망인수당 5만원	1,020	-나이 및 거주기간제한 없음 -보훈수당과 참전수당 중복지원 불가
포천시	7만원	-	1,883	-나이 및 거주기간제한 없음
동두천시	5만원(65세이상)	-	1,060	-1개월 이상 거주 -참전미망인 포함 지급
가평군	5만원	10만원	1,136	-나이 및 거주기간제한 없음 -보훈수당과 참전수당 중복지원 불가
연천군	7만원 (65세 이상)	-	817	-거주기간제한 없음

참고자료 2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급여 지급현황

□ 총괄 지급현황

(2018.4월 기준, 단위 : 명)

구분	합계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애국지사유족	상이군경유족	무공·보국수훈자	고엽제전우회	보훈보상자(재해군경)	특수유공자	참전유공자	기타
양주시	2,656	19	445	567	181	23	21	1,349	51

※ 기타 : 4·19혁명유공자, 5·18민주유공자, 6·18자유상이자, 공상(순직)공무원, 재일학도의용군

□ 유형별 지급기준

○ 독립유공자

(단위 : 천원 / 월)

대상별		보상금	특별예우금(순애기금)	합계		
본인	건국훈장	1~3 등급	5,521	2,325	7,846	
		4 등급	2,939	1,920	4,859	
		5 등급	2,325	1,725	4,050	
	건국포장		1,666	1,575	3,241	
	대통령표창		1,094	1,575	2,669	
유족	건국훈장	1~3 등급	배우자	2,445		2,445
			기타유족	2,117		2,117
		4 등급	배우자	1,802		1,802
			기타유족	1,764		1,764
		5 등급	배우자	1,467		1,467
			기타유족	1,433		1,433
	건국포장		배우자	1,030		1,030
			기타유족	1,023		1,023
	대통령표창		배우자	600		600
			기타유족	587		587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160 ~ 220, 4인이상 : 210 ~ 270		

○ 국가유공자 및 유족(기존 등록자)

○ 상이군경 등

(단위 : 천원 / 월)

상이등급별		보상금	수당		합계	
			고령무의탁	중상이부가		
상 이 군 경	1급1항	고 령	2,828	97	2,121	5,046
		일 반	2,828	-	2,121	4,949
	1급2항	고 령	2,667	97	1,467	4,231
		일 반	2,667	-	1,467	4,134
	1급3항	고 령	2,553	97	894	3,544
		일 반	2,553	-	894	3,447
	2급	고 령	2,270	97		2,367
		일 반	2,270	-		2,270
	3급	고 령	2,121	97		2,218
		일 반	2,121	-		2,121
	4급	고 령	1,780	97		1,877
		일 반	1,780	-		1,780
	5급	무의탁	1,474	274		1,748
		고 령	1,474	97		1,571
		일 반	1,474	-		1,474
	6급1항	무의탁	1,345	274		1,619
		고 령	1,345	97		1,442
		일 반	1,345	-		1,345
	6급2항	무의탁	1,239	274		1,513
		고 령	1,239	97		1,336
일 반		1,239	-		1,239	
7급	무의탁	438	274		712	
	고 령	438	97		535	
	일 반	438	-		438	
* 간 호 수 당		·1급1항 2,306, 1급2항 2,218, 1급3항 2,133, 2급 737				
* 전 상 수 당		·23				
재일학도 의용군인	무의탁	1,239	274		1,513	
	고 령	1,239	97		1,336	
	일 반	1,239	-		1,239	
4·19혁명공로자		·300				
생활조정수당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160~220, 4인이상 : 210~270				

○ **군경유족 등**

(단위 : 천원 / 월)

대 상 별			보상금	수당	합계	
유 족	배 우 자	전몰·순직	무 의 탁	1,434	274	1,708
			무의탁부모부양	1,434	149	1,583
			고 령	1,434	149	1,583
			일 반	1,434	-	1,434
		상이 1급·5급, 6급상이사망	무 의 탁	1,292	274	1,566
			무의탁부모부양	1,292	149	1,441
			고 령	1,292	149	1,441
			일 반	1,292	-	1,292
		6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473	274	747
			무의탁부모부양	473	149	622
			고 령	473	149	622
			일 반	473	-	473
	*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1인 양육 50 / 2인 양육 185 (추가 1인당 185 가산)		
	부 모	전몰·순직	무 의 탁	1,409	274	1,683
			독 자 사 망	1,409	274	1,683
			고 령	1,409	97	1,506
			일 반	1,409	-	1,409
		상이 1급·5급, 6급상이사망	무 의 탁	1,271	274	1,545
			고 령	1,271	97	1,368
			일 반	1,271	-	1,271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449	274	723	
		고 령	449	97	546	
		일 반	449	-	449	
* 2명이상 사망수당			2인 사망 : 274 (1인 추가 시 274 가산)			
미성년 (성년 장애) 자녀		전 몰 · 순 직		1,663	-	1,663
	상이 1급 ~ 5급·6급상이사망		1,499	-	1,499	
	6급 비 상 이·7급 상 이 사 망		685	-	685	
	* 미성년제대 양육수당		·1인 양육 100/ 2인 양육 370 (추가 1인당 370 가산)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160~220, 4인이상 : 210~270			
6·25 자 녀 수 당			·체적자녀 : 1,240(위로가산금 50추가), 승계자녀 : 1,054, ·신규대상자녀 : 124(생계근린한 경우 114천원 추가 지원)			

○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단위 : 천원 / 월)

무공영예수당	·인헌 360, 화랑 365, 충무 370, 을지 375, 태극 380
참전명예수당	·300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수당**

(단위 : 천원 / 월)

대 상 별	고 도 장 애	중 등 도 장 애	경 도 장 애
후 유 의 증 수 당	902	666	437
후유증2세환자수당	1,608	1,248	1,003

○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 7. 1.이후 등록자)

(단위 : 천원 / 월)

대 상 별		보상금	증상이부가수당	합계	
상 이 자	1급 1항	2,828	2,121	4,949	
	1급 2항	2,667	1,467	4,134	
	1급 3항	2,553	894	3,447	
	2 급	2,270		2,270	
	3급	2,121		2,121	
	4급	1,780		1,780	
	5급	1,474		1,474	
	6급 1항	1,345		1,345	
	6급 2항	1,239		1,239	
	6급 3항	831		831	
	7급	438		438	
	* 간 호 수 당		·상시 2,306/ 수시 1,537		
	* 전 상 수 당		·23		
	* 부양가족수당		·배우자 100 / 자녀 5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유 족	배우자	전몰·순직	1,434	1,434	
		상이 1~5급	1,292	1,292	
		상이 6급	473	473	
	부 모	전몰·순직	1,409	1,409	
		상이 1~5급	1,271	1,271	
		상이 6급	449	449	
	자 녀	전몰·순직	1,663	1,663	
		상이 1~5급	1,499	1,499	
		상이 6급	685	685	
	* 부양가족수당		·자녀 100/ 제매 200		
	* 2명이상 사망수당		·274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생활조정수당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160~220, 4인이상 : 210~270		

○ 보훈보상대상자

(단위 : 천원 / 월)

대 상 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합계	
상 이 자	1급 1항	1,980	1,485	3,465	
	1급 2항	1,867	1,027	2,894	
	1급 3항	1,787	625	2,412	
	2급	1,589		1,589	
	3급	1,485		1,485	
	4급	1,246		1,246	
	5급	1,032		1,032	
	6급 1항	942		942	
	6급 2항	867		867	
	6급 3항	582		582	
	7급	307		307	
	* 간 호 수 당		·상시 2,306, 수시 1,537		
	* 부 양 가 족 수 당(6급이상)		·배우자 100 / 자녀 5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유 족	배우자	사망	1,004	1,004	
		1~5급 유족	904	904	
		6급 유족	331	331	
	부 모	사망	986	986	
		1~5급 유족	890	890	
		6급 유족	314	314	
	자 녀	사망	1,164	1,164	
		1~5급 유족	1,049	1,049	
		6급 유족	480	480	
	* 부 양 가 족 수 당		·자녀 100/제매 20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생활 조정 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160~220, 4인이상 : 210~270			

○ 사망일시금

(단위 : 천원 / 월)

대 상 별			지급액	대 상 별			지급액	
독립유공자 본 인	건국 훈장	1~3등급	3,268	상 이 군 경	1급		1,704	
		4등급	3,208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1,444
		5등급	1,704			유족 보상금 승계		1,127
	건국포장		1,208					
	대통령표창		1,127					
독립유공자 유 족	건국 훈장	1~3 등급	배우자	2,261	재 일 학 도 의 용 군		1,127	
			기타유족	2,200				
		4등급유족		1,989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 (보상금 종결시)		1,127	
		5등급유족		1,127				
	건국포장유족 대통령표창유족		1,127					

□ 참전명예수당

- 대 상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지원인원 : 1,432명(2018.6월 기준)
※ 6.25참전유공자 445명, 월남전참전유공자 987명
- 지원금액 : 12만원 / 년
- 지원시기 : 매년 6월

□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차상위계층 이하인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인원 : 202명(2018. 9월 기준)
- 지원금액 : 10만원/월
- 지원시기 : 매월 25일